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-해산장제급여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 및 사망한 경우 해산 및 장제급여 각각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3,895,920천원	(국비)2,557,000천원	(시비)1,338,92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희망복지지원과	김철수 2133-7370	유규용 2133-7387	김현숙 2133-7389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2,435,234) 3,710,436	(x2,557,000) 3,895,920	(x121,766) 185,484	(x5) 4
사회보장적수혜금	(x260,174) 520,348	(x273,100) 546,200	(x12,926) 25,852	(x4) 4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2,175,060) 3,190,088	(x2,283,900) 3,349,720	(x108,840) 159,632	(x5) 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시설수급자 해산장제급여	=	546,2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	546,200,000원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,349,720,000원	= 3,349,720천원

3 사 업 설 명

사업목적

- 기초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보호와 조치
-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~4조, 제7조, 제13~14조, 제43조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176,009가구 264,227명(? 17. 12월)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내용
 - 해산급여 :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
 - 장제급여 :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
- 총사업비 : 3,895,920천원(국비 2,557,000천원, 시비 1,338,920천원)
 - 재원분담비율 : 일반(국비 60%, 시비28%, 구비12%), 시설(국비50%, 시비50%)

추진경위

-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, 생계보호 실시
 - 1982년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실시
 -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,면,동에 배치 시작
-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('99.09.07)(생활보호법 대체)
 -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 시행, 주거급여 별도 규정
-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('14.12.30)
 -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첫 시행(중위소득 도입,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)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,895,920	
보조금 집행 및 정산	2018.01~2018.12	3,895,920	자치구별 월별 보조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,107가구 259,446명 ○ 예산 집행 3,358,898천원(예산액 3,358,898천원, 집행률 100%)
2016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3,675가구 267,978명 ○ 예산 집행 3,664,639천원(예산액 3,818,104천원, 집행률 96%)
2017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6,009가구 264,227명 ○ 예산 집행 3,592,582천원(예산액 3,710,436천원, 집행률 96,8%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2,012,000) 3,123,795	(x-)	(x-)	(x2,241,626) 3,458,011	(x2,166,968) 3,323,307	(x-)	(x74,658) 134,704
2015	(x2,205,156) 3,358,898	(x-)	(x-)	(x2,205,156) 3,358,898	(x2,205,156) 3,358,898	(x-)	(x-) 0

2016	(x2,293,000) 3,487,312	(x-)	(x-)	(x2,518,540) 3,818,104	(x2,415,735) 3,664,639	(x-)	(x102,805) 153,465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